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헌장

시 행 세 칙

제1장 회 원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헌장에 의거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 헌장의 제1장 제2조에 준하는 본회 목적에 찬동하는 예장(통합) 소속 교회의 등록교인으로 만 18세 이상의 여성으로 한다.

제3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본회의 소집 회의 및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회비 부담, 회칙 준수 및 결의사항 이행으로 한다.

제4조 [회원의 상벌규정]

1.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지연합회는 임원회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의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자격정지, 의결권 제한,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본회 헌장 및 시행세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2) 제3조에 명시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본회 총회 결의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회 및 회원들을 상대로 재산상, 신용상 손해를 끼친 경우
 5) 제명 외의 징계는 임원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명은 총회에서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절차에서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3. 본 규정에 의한 시행사항과 관련하여 본회 헌장과 규칙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법정에 제소함으로 본회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한 자는 본회 임원 및 실행위원(각 부서장 및 상임위원장), 전문 및 자문위원, 공천위원장에 선임될 수 없으며, 최하 2년 최대 4년간 모든 부서의 임원직을 맡을 수 없고, 유관기관 및 협력기관에 본회 파송을 받을 수 없다.

제2장 총 대

제5조 [총대수]

본회 헌장 제5조 2항의 지연합회의 총대수는 지연합회의 총회상황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정한다.

제6조 [총대 명단 보고]

1. 총대 명단 보고는 본회 총회 개최 6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한다.
2. 총대 명단 보고 시 예비후보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추후 총대 변경이 있을시 예비후보 순번에 따라 변경한다. 단, 예비후보 수는 총대수의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제7조 [총대의 권리와 의무]

1. 총대는 결의권,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회칙과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총대의 권리는 등록비 납부와 임원회 인준을 거친 후, 총회 당일 개회와 동시에 개시된다.

제8조 [총대의 자격 제한]

1. 지연합회가 본회와 협력하지 않을 경우 임원회에서 총대 인준을 제한할 수 있다.
2. 본회의 총대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회 및 회원들을 상대로 손해를 끼치거나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본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자, 총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임원회의 결의로 총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산하기관, 유관기관, 연합기관, 협력기관

제9조 [산하기관(단체)]

1. 산하기관(단체)은 본회 총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 기관이며, 정관(회칙)의 승인, 감독, 재정 감사, 명령을 받는 기관이다.
 1) 사회복지법인 여전도회 작은자복지재단
 2) 사단법인 예장여연
2. 산하기관 중 법인은 본회에서 '운영비 보조' 또는 '목적사업 기부금' 명목으로 운영비를 지원받아 집행하는 대신, 본회의 시행세칙을 준수한다.
3. 산하기관(단체)은 명칭 변경, 해산시의 잔여재산 귀속 처분을 할 경우에는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산하기관(단체)의 재산은 해당 법인기관 및 단체 이사회가 임의로 해외에 투자할 수 없고, 개인 혹은 특정 단체에게 무상증여, 보상, 분양, 증여할 수 없다.

제10조 [유관기관]

유관기관은 독립된 기관(법인)이지만, 공익적 이익을 위해 본회 총회나 임원회가 이사회 구성이나 중요한 법인의 의사표시에 대해 일정한 부분의 감사권, 감독권, 승인권을 갖는 기관이다.

1.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유지재단
2. 한국기독교회관
3.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제11조 [연합기관]

연합기관은 본회에 속하거나 의무를 갖지 않으나 본회에서 일정 인원이나 재정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본회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파송된 위원(이사)을 소환, 행정보류(재정 지원 보류 포함)할 수 있으며, 1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하지 않을 경우 총회의 참석 과반수 결의로 탈퇴할 수 있다.

1. 한국교회여성연합회
2. 한국장로교여성협의회
3. 새가정사
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5.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6. 한국기독공보사
7. 서울여자대학교
8. 장로회신학대학교
9. 서울장신대학교
10. 대전신학대학교
11. 영남신학대학교
12. 호남신학대학교
13. 한일장신대학교

제12조 [협력기관]

협력기관은 본회에 속하거나 의무를 갖지 않으나 본회에서 일정기간 동안 재정을 지원하는 기관(단체)로서, 본회 임원회의 결의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남선교회전국연합회
2. 청년회전국연합회
3. 중고등부전국연합회
4. 아동부전국연합회
5. 영유아유치부전국연합회
6. 전국교목연합회
7. 총회 문화법인
8. 총회 한국교회연구원
9. 총회 선교사자녀(MK) 사역위원회
10. 총회 군선교후원회
11. 아가페 소망교도소
12. 실로암 안과병원
13. 목회자유가족협의회
14. 애란원(미혼모 시설)
15. 평신도신문사
16. 한국장로신문사
17. CTS(기독교 TV)
18. (사)김마리아기념사업회
19. (사)김필례기념사업회

20. 전국여교역자연합회
21. 전국교역자부인연합회
22. 전국장로회연합회

제13조 [산하기관 및 관계기관 이사 및 위원 선임]
1. 산하기관 대표는 공천위원회의 공천에 의하여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산하기관의 이사는 본회 임원회가 선임하여 파송하되, 당해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연합기관의 이사, 임원 및 위원은 본회 임원회의 과반수 이상 결의를 거쳐 파송한다.

제4장 공천위원회

제14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이하 '본회')의 공천위원회와 공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성과 효율성에 기반 한 인재등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 [공천 원칙]
1. 지역별 균등 배분: 전국 72개 지연합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지역에 인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안배한다.
2. 해당 회기 지연합회 총대 중에서 공천하여 선출한다.

제16조 [구성 및 조직]
1. 공천위원회 구성은 총 7인으로 하되 전국연합회 전회장 2인, 각 지역별 5개 권역(서울강북, 서울강남, 서부, 동부, 중부) 대표 5인으로 한다.
2. 공천위원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을 둔다.
3.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참석회원 2인 이상의 구두호천으로 선출한다.
4. 서기와 회계는 위원장이 선임하여 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7조 [공천 범위]
공천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의 인사를 공천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1. 전국연합회 임원(회장, 직전회장 제외)
2. 각 부서 대표(정, 부)
3. 상임위원회 대표(정, 부)

제18조 [공천 조건]
1. **임기**: 모든 직책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단, 산하기관은 해당 법인의 규정에 따른다.)
2. **결격 사유**: 윤리적·재정적 범죄 경력이 있거나, 연합회 의무(회비 등)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공천에서 제외한다.

제19조 [회의 및 절차]
1. **회의 소집**: 정기총회 개회 3개월 전까지 소집하여 조직을 완료한다.

제20조 [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교단 총회 공천위원회 조례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5장 수정 및 개정

제21조 [시행세칙의 수정 및 개정]

본 시행세칙은 실행위원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0. 8. 18.
개정 2021. 7. 20.
개정 2021. 9. 14.
개정 2026. 7. 21.